

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 제정 안내

1. 규정명 : 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
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
5. 시행일자 : 2021년 9월 24일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.
다만,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
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
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.